

야간금고약관

제1조(야간금고 이용) ①야간금고는 영업시간 외에 본인의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입금의 경우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 소정의 입금의뢰서에 일자, 성명, 금액 기타 소정 항목을 기입한 후 현금 및 어음, 수표 등 저희 상호저축은행 예금규정상 입금이 가능한 유가증권과 통장을 예입대에 넣은 후 열쇠를 잠그고 야간금고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입한 후 이의 확인을 위하여 투입구를 한번 열어 보고 예입대가 밑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조(입금 정리) ①야간금고에 투입된 예입대는 익영업일에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익영업일의 입금으로 저희 상호저축은행 예금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예입대, 예금통장 등은 입금절차 완료후에 수령인을 받고 교부합니다.

제3조(입금내용 상위시의 처리) 입금한 현금, 어음, 수표 등이 동봉한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금액과 상위할 경우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합니다.

제4조(사고신고) ①예입대 투입구 열쇠, 예입대, 예입대 열쇠의 보관에 대하여는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의 승인없이 재제작할 수 없습니다.

②예입대 투입구 열쇠, 예입대, 예입대 열쇠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그 뜻을 서면으로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전항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재제작 또는 수리하는 경우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해지) ①야간금고를 3개월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기타 저희 상호저축은행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시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일시중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입대 투입구열쇠, 예입대, 예입대열쇠를 즉시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면책) 예입대가 열려져 있거나 투입방식의 불완전에 의한 사고등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양도·전대 등의 금지) 야간금고의 이용권은 매매, 양도, 전대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